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2007. 2. 7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순서

Ⅰ 추진배경

Ⅱ 비전과 추진전략

Ⅲ 부문별 정책과제

Ⅳ 수도권 질적 발전

Ⅴ 향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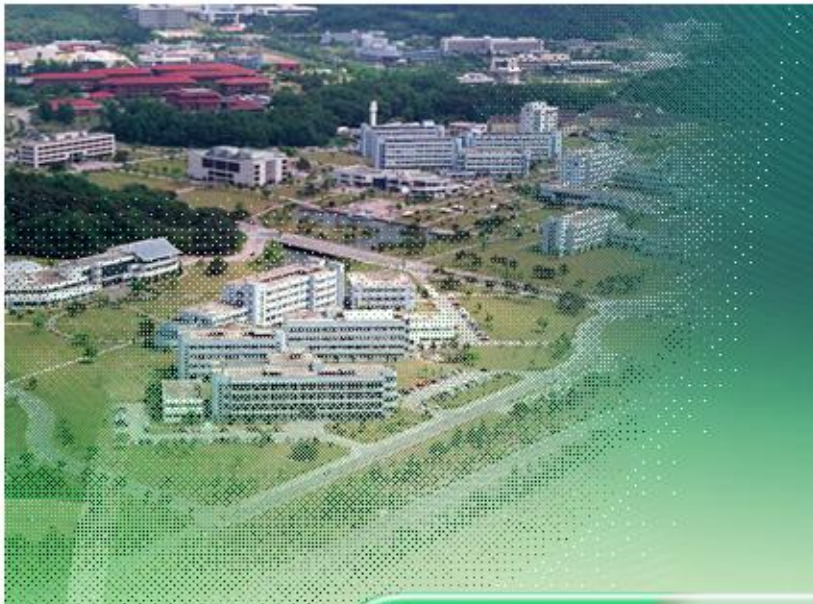

Ⅰ 추진배경

1. 왜 2단계 정책이 필요한가?

그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 중점

- 공공부문 주도의 국가기관 이전, 행복 · 혁신 · 기업도시 건설
- 인재 · 기술 · 산업이 결합된 내재적 지역혁신 역량 강화
  - ➡ 비수도권 GRDP 및 수출 비중 증가 등 성과

수도권의 강력한 흡인력 지속

- 수도권 인구 비중[%]: (02)47.2 → (06)48.7
- 총사업체 수 비중[%] : (02)45.6 → (05)46.6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

- 민간부문의 투자 촉진으로 획기적 지방발전 전기 마련
- 1단계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완성도 제고

2. 참여정부의 정책의지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02년 대선공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차등 부과 및 교육·보육분야의 획기적 재정지원 방안 검토
  ['06. 9.19/10.17]

-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법인세 차등화, 복지·보육 등 획기적 정책 검토
  ['06.11.2, 제3기 균형위 출범시]

-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확실한 2단계 지역균형정책 개발
  ['06.11.29, 누리사업성과보고회]

Ⅱ 비전과 추진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정책비전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

2단계 (민간부문)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1단계 (공공부문)

다핵형 국토공간 형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기업도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 역량 강화

-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 지역 R&D 역량 강화
- 지역전략산업 육성

2. 추진전략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유인 제공

-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 조세, 인력, 부지 문제 해결
-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 주거 · 교육 · 의료 등 기반 확충

지역거점 중심으로 집중 지원

- 지방 대도시, 산업단지 클러스터, 중소도시 등 지역발전 거점 활용
- 기업환경 · 생활여건 등 종합 패키지 지원

지역별 인센티브 차등화

- 지역발전 정도, 투자환경 등을 감안 3그룹으로 분류
  - 분류(안) : 발전지역, 성장지역, 정체지역
- 지역분류, 고용효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3. 추진과제 : 2대 부문 14개 과제

정책 부문

정책 과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1.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
2. 인력난 해소
3. 산업용지 공급 확대
4.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6.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7.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살기좋은 생활여건 조성

1. 고품질 주택 공급
2.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3.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4.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5.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6.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7.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Ⅲ 부문별 정책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정책방향

- 지방 창업 · 이전 · 사업운영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인 세금 · 인력 · 부지문제 집중 해결

① 법인세 부담의 대폭 경감

- 지방 창업 · 이전, 기존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 경감
  [1안]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10~30년) 병행
  [2안] 감면 대상기업 확대 및 감면기간 대폭 연장
  ※ 정책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 경감방안을 최종 확정
- 지역발전 정도, 고용효과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대폭 조정
  (현행 : 대기업 15%, 중소기업 : 10%)
- 외국인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감 혜택 부여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② 인력난 해소

• 지방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기존 지방기업이 신규 투자로 일정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경우 지급

※ 현재 지방이전 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50만원 지급

•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

- 외국인 고용한도 추가 허용 : 현행 기준 + 20%
- 지방기업의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

•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 양성제도 도입

-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훈련 과정에 맞추어 계약형 학과 등 집중 지원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

• 저가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 산업단지 공급 애로지역에 집중 지원
  ※ 필요 시 농업진흥지역 등도 적극 활용
- 혁신/기업도시에 초장기 임대산업단지 공급
  (예) 평당 연간임대료 : 조성원가의 1% 미만, 임대기간 : 50년

• 산업용지 공급 특례제도 도입

- 이전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필요한 부지 적기 공급 지원
  ※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산업용지 애로타개위원회」(가칭)를 두어 토지이용 규제 일괄처리
-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인프라(도로, 상하수도 등) 지원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④ 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으로 지방에 외자유치 확대
- 자유무역지역를 확대 지정하여 수출기업 및 지역경제 육성

※ 현행 세제 지원(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 법인세 3년 100% 그후 2년 50%

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 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 이전시 상업적 도시개발 허용

(예) 1,000명이상 고용기업에 100만평 규모 이내의 도시개발 허용

1.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⑥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

- 본사와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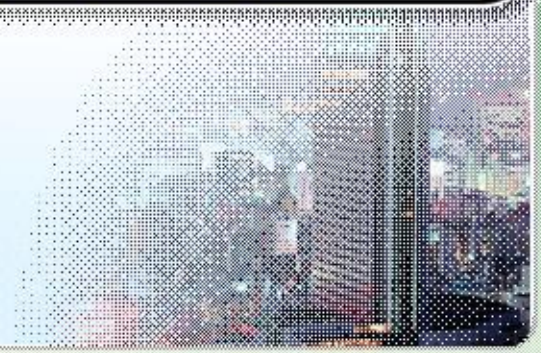

⑦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기업경영 및 종업원 생활여건 개선 등 포괄적 지원대책 마련
  - 기업경영 애로사항 : 용지확보, 공장설립, 종업원 교육 등
  - 종업원 생활여건 : 주택 · 교육 · 보육 등
- 종합패키지 지원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 · 지자체 ·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기업별 합동지원팀 구성 · 운영

2.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정책방향

- 주거 · 교육 · 의료 · 복지부문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
- 배후 지역과 연계하여 거점도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① 고품질 주택 공급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분양 제도 도입
  - 거주기간, 청약예금 가입 등 자격요건 면제 · 완화
  -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허용 기간(현행 2년) 대폭 연장
-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에게 임대주택 공급 지원
  - 지방이전 기업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 지방이전 기업의 전원마을 조성 지원
  - 종업원용 전원마을 조성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지원

2.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②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 **지방의 초중학교를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운영**
  - 특기 · 적성교육 및 지역사회의 문화 · 복지 · 학습 거점으로 활용

- **지방 명문고교 육성**
  - 전국지역 대상 1군 1우수고 육성(136개교)
  - 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
    -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원인사 등 자율권 부여

-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품질 향상**
  - 프로그램 전문화 : 예체능, 과학, 논술 등 교사 아웃소싱 비율(3.3%) 확대
  - 지방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충원율(13%) 대폭 제고

2.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 **지방대학 진학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 이공계열 : 국가 장학금 지방 지원비율 확대(35%→60%)
  - 인문계열 : 지방대학에 이공계와 동일조건으로 학비 지원

- 선행 선발기준(내신성적 상위 20%, 수능성적 2등급)

- 지방대학에 현대적
  - 신세대 취향에 맞게
    기숙사 확충
    ※ 단체생활형 → 개인/

2.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 **지방대학 기부금 납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상속재산 지방대학 기부시 상속세 감면
  -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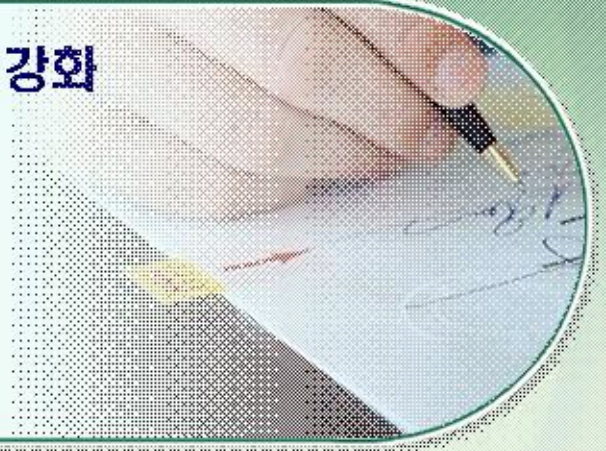

- **출연연구기관과 지방대학의 전략적 제휴 지원**
  - 지방대학 특화 발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기여

    (예) 인사교류 · 공동연구 등 포괄적 협약(MOU)체결
    비수도권 지자체의 비용 부담조건으로 분원 설치 · 운영 등

2.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④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 체계적인 지역 의료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

지역보건소	지방의료원	지방국립대 병원
1차 진료 지역의료건강센터	2차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	3차 의료기관으로 특화 발전 유도

- 주민 밀착형 의료서비스 공급

주민건강정보 DB화 → 정기적 검진 (방문검진) → 응급의료 지원

⑤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 · 문화 · 복지 인프라 확충

- 혁신 · 기업 도시내 개방형 자율학교 우선 지정
- 문화 · 예술 등 국립시설 집중 배치 및 복지시설 확충 지원

2.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⑥ 지방의 사회개발 투자 확대

-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 사회개발분야 비중을 40%수준으로 확대
  - ※ '07년 사회개발 지출 비중 : 36.2%

⑦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배분기준 개선**
  - 재정력 지수, 노령화 등 낙후도 요소 반영 확대
- **매칭펀드 사업의 지방분담 비율 차등화**
  - 차등화 대상사업 및 차등 폭을 대폭 확대
  -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참고> 재원소요

- 재정지출 소요 : 연간 1.2조원 내외
  - '07년 기존 예산규모 : 5천억원 수준
  - '08년에 5천억원 규모 증액 필요

  ※ 기금 · BTL 재원(2천억원) 별도

- 법인세는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구체적 경감 방안 및 규모 결정

Ⅳ
수도권 질적 발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 발전방향

-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경쟁력 강화
  - 교육, 문화, 주거,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식클러스터, 국제교류, 금융기능 강화 및 SOC 확충

- 지방화 시책과 연계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
  - 현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계획적 관리계획 수립중

    ※ 국토연구원에서 '06.12월 기초연구 수행,
    '07.12월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V 향후 추진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추진방안

과제구분	조치계획
• 국민적 호응이 높고, 정책적 논쟁의 소지가 적은 과제 (예) · 인력난 해소 · 고품질 주택 공급 · 산업용지 공급 확대	• 정부 주도로 즉시 추진 – '08년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07. 6) – 법령 개정 추진 ('07. 9)
• 국민적 합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과제 (예) ·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 · 대기업 지방 투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인정	• 국민적 합의 후 법률 개정 – 정책 의제화하여 토론 및 합리적 대책개발 유도 – 법률 제·개정

2.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부문		과 제 명	조치유형			시행시기		차등화 방안	
			행정조치	법령개정	국민합의	단기	중장기	2그룹	3그룹
정책과제	기업대책	①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		○	○		○		○
		② 인력난 해소	○			○			○
		③ 산업용지 공급 확대	○			○			○
		④ 경제자유구역 · 무역자유지역 추가 지정	○			○		○	
		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	○	○		○			○
		⑥ 대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출총제 예외 인정		○	○		○	○	
		⑦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		○	
	사람대책	① 고품질 주택 공급	○			○		○	
		② 지방 초중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	○			○			○
		③ 경쟁력있는 지방대학 육성	○				○		○
		④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			○			○
		⑤ 지역 선도도시의 교육·문화·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				○	○	
		⑥ 지방의 사회개발투자 확대	○			○			○
		⑦ 지방재정 배분시 낙후도 반영 확대	○			○		○	
계		2대 부문 14개 과제	12	3	2	10	4	6	8

3. 향후 일정

'07. 2월

- 정책 설명 및 공론화 추진

'07. 3월

-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07. 4월중 국무회의 상정

'07. 6월

- '08년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07. 9월

- 법안 국회 제출